

직장 내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보건 및 정신위생부 국장의 명령

2020년 3월 12일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COVID-19가 뉴욕시 주민들의 보건과 안녕에 미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해 시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비상 행정 명령 제98호를 발령했고, 그 명령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0년 3월 25일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 국장이 COVID-19가 시 주민들의 보건과 안녕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위협을 다루기 위해 시에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있음을 선포했고, 그런 선포와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COVID-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변이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26일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오미크론이라는 COVID-19 새 변이를 우려되는 변이로 선포했고, 예비 증거에 의하면 재감염 위험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뉴욕주가 2020년 4월 이래 보지 못했던 COVID-19 감염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달 새로운 COVID-19 입원 환자수가 매일 300여건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파악되어 2021년 11월 26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전체에 새롭게 부상하는 COVID-19에 의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행정 명령 제11호를 발령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내뿜은 후 다른 사람들이 호흡 시 그 바이러스를 들이마시거나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눈이나 코, 입에 닿을 때 COVID-19가 확산되는데, 감염자 주위 6피트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화장실, 엘리베이터, 로비, 회의실과 휴게실, 기타 공용 공간 등 사무 공간과 시설을 공유하는 직장 환경에서 COVID-19 감염 위험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COVID-19, 특히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COVID-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백신 접종자와 연령, 건강 상태, 기타 상태로 인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백신 접종자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혜택이 되는 백신 접종 등의 조치를 모든 개인에게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예일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의하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때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시행된 시의 백신 접종 캠페인을 통해 약 25만 건의 COVID-19 사례,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약 4만 4천 건의 입원과 약 8천 3백 건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됨이 입증되었으며, 시에서는 그후 감염 사례와 입원, 사망의 예방 건수가 증가했다고 믿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15일 사이에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의 98% 이상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고용주가 직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백신 접종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공중안전을 조성할 거라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들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동료와 대중의 일원에게 COVID-19를 전염시키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또 각 연방 정부 기관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예외 사항만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허용하는 선까지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며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8월 16일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실내 유희, 식사, 피트니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용객에게 승인받은 COVID-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Key to NYC"라는 비상 행정 명령 제225호에 서명했고, 그 명령이 2021년 12월 13일 비상 행정 명령 제316호로 재발령되어 아직 유효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8월 24일 제가 교육부 직원, 계약자, 방문자는 DOE 건물이나 학교 환경에 출입하기 전에 COVID-19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령했고, 그런 명령이 2021년 9월 12일과 15일에 재발령되어 그후 2021년 9월 28일에 후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그런 명령들과 개정 명령이 2021년 9월 17일과 2021년 10월 18일 보건이사회의 기준을 얻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9월 12일 제가 교육부나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계약을 맺고 유아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COVID-19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령했고, 그 명령이 2021년 9월 17일 보건이사회의 기준을 얻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10월 20일 제가 시 정부 직원들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사무국에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령했고, 2021년 10월 31일 제가 보충 명령을 발령했고, 두 명령이 2021년 11월 1일 보건이사회의 기준을 얻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11월 17일 제가 프로그램과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명시된 대로 보육 프로그램 직원들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령했고, 그 명령이 2021년 11월 19일 보건이사회의 기준을 얻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2021년 12월 2일 제가 모든 비공립 학교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령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뉴욕시 헌장("헌장") 섹션 제558에 의거 보건이사회는 보건 및 정신위생부("부서")의 권력과 권한이 미치는 선까지 보건법에 있는 모든 사안과 주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헌장 섹션 제556과 보건법 섹션 제 3.01(c)에 의거 부서는 전염성 질병과 생명과

보건에 해가 되는 질병을 통제하고 공중보건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뉴욕시 행정법("행정법") 섹션 제17-104에서는 부서가 COVID-19 같은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지시하며, 행정법 섹션 제17-109(b)에 따라 부서가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법 섹션 제3.01(d)에 의거 현존하는 위협에 맞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공중보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와 시 주민의 보건과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발령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고 그런 섹션에 의거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런 **까닭에 이제** 저 Dave A. Chokshi, MD, MSc 보건 및 정신위생부 국장은 뉴욕시에서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시와 시 주민의 보건과 안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현 비상 사태를 방지하고 완화하고 통제하고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에 보건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다음을 명령한다.

1. 2021년 12월 27일부터 근로자는 반드시 COVID-19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한 후 적용 대상 사업체인 직장에 출입해야 하며, 적용 대상 사업체는 제5항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근로자를 반드시 직장에서 배제해야 한다.
2. 적용 대상 사업체는 근로자의 백신 접종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체는,
 - a. 각 근로자의 백신 접종 증빙 사본과 해당하는 경우 (b)(iv)에 명시된 대로 합리적인 편의(들)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는
 - b. 그러한 백신 접종 증빙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그런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근로자 성명
 - ii. 해당 근로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여부
 - iii. 2회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일차 접종 증빙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차 접종 증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기한일. 이때 그 날짜는 일차 접종 증빙이 제출된 지 45일이 반드시 넘지 않아야 한다.
 - iv. 합리적인 편의를 이유로 COVID-19 백신 접종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그 기록에는 그러한 편의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적용 대상 사업체는 반드시 그런 편의의 근거를 명시하는 기록과 그런 근로자가 제시한 문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또는
 - c. 근로자의 직장 출입을 허용하기 전에 백신 접종 증빙을 확인하고 확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계약자 등 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적용 대상 사업체는 상기 기록을 유지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백신 접종 증빙을 확인해줄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사업체는 그런 요구와 확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섹션에 의거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기록은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체는 시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에 맞게 본 섹션에 따라 필수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록이 검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적용 대상 사업체는 늦어도 2021년 12월 27일까지 본 명령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서명한 후 해당 확인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본 명령의 목적상,
 - a. "적용 대상 사업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i. 뉴욕시에서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뉴욕시에 직장을 유지하는 비정부 사업체. 또는
 - ii.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 활동 중에 근로자나 대중과 교류하는 자영업자나 단독 전문직 종사자.
 - b. "백신 완전 접종"이란 개인이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나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또는 부서가 본 명령과 관련된 지침에서 규정한 기타 모든 상황에 의해 사용이 인가됐거나 승인되었으며 1회 접종을 요구하는 COVID-19 백신을 1회 접종했거나 2회 접종 COVID-19 백신을 이차 접종한 지 최소 2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백신 증빙"이란 개인이 (1) COVID-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거나, (2) 1회 접종 COVID-19 백신을 접종했거나, (3) 2회 접종 COVID-19 백신을 일차 접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의미한다. 이때 (3)의 경우는 그런 일차 접종 증빙을 제시하는 근로자가 일차 접종 후 해당 백신을 45일 이내에 이차 접종했다는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i. CDC의 COVID-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 또는 백신을 접종한 사법당국이나 시, 주, 국가가 발행했거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백신을 접종한 기타 승인된 백신 접종 실시자가 제공하는 기타 공식 예방 접종 기록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 백신 브랜드, 접종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의 사진이나 복사본도 사용할 수 있다.
 - ii. 백신 접종 기록을 보여주는 New York City COVID Safe 앱.
 - iii. 유효한 뉴욕주 Excelsior Pass/Excelsior Pass Plus.

iv. CLEAR Health Pass. 또는

v. 백신 접종 증빙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국장이 명시한 기타 방법.

d. "근로자"란 뉴욕시 직장에서 대면 근무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근로자에는 적용 대상 사업체의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 고용주, 피고용인, 인턴, 자원봉사자, 계약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단독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다음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i. 재택 근무하며 직업적으로 직장 동료나 대중의 일원과 교류하지 않는 개인.

ii. 단시간 제한적인 목적으로 직장에 출입하는 개인. 또는

iii. Key to NYC 프로그램, 비상 행정 명령 제316호, 후속 명령들에 의거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공연 예술가, 대학이나 프로 운동선수, 그러한 공연 예술가나 대학 또는 프로 운동선수를 동반하는 시 주민이 아닌 개인.


e. "직장"이란 차량을 비롯해 다른 근로자나 대중의 일원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위치를 의미한다.

5. 본 명령에 있는 어떤 내용도 의료적이거나 종교적 이유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명령은 이미 부서 국장이나 보건이사회, 시장이나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기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또 다른 명령의 적용을 받아 백신 완전 접종의 증빙을 유지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적용 대상 사업체나 개인 또는 그러한 명령의 요건에 의거 합리적인 편의를 부여받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본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건법 섹션 제3.01(d)에 의거 본 명령을 지속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보건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날짜: 2021년 12월 13일



Dave A. Chokshi, MD, MSc

국장